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12-20

대 법 원

제 3 부

판 결

사 건 2016다244972 부당이득금

원고, 상고인 A

피고, 피상고인 [redacted]시

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7. 22. 선고 2015나62189 판결

판 결 선 고 2016. 11. 25.

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이 유

상고이유를 살펴본다.

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,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,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.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12-20

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대법관 김재형

대법관 박병대

주 심 대법관 박보영

대법관 권순일